분 묘 개 장 공 고(2차)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-467(2009.12.16)호로 개발계획 승인·고시된 『부산장안 택지개발사업지구(2단계)』 내에 소재하는 아래 분묘에 대하여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,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.

1.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

소재지	소재지번	기수
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	361-4, 374-4, 산16-93, 산24-11, 산25-7	15기

2. 개장사유 : 부산장안 택지개발사업(2단계) 시행

3. 개장방법

- 유연분묘 :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하되 공고기간 내 미이장시 임의개장 납골
- 무연분묘 :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납골

4. 안치장소 및 기간(무연분묘) : 납골당에 봉안, 기간 10년

5. 공고기간 :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(2018.06.18 ~ 2018.09.18) 이상

6. 개장 신고처 및 문의처

- 신고처 : 장안읍사무소[☎(051)709-5174]
- 문의처 :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장안PM팀
  [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75-3 정관제일타워2 501호 ☎(051)711-4385, 4381]

7. 신고시 구비서류 : 분묘연고자(관계인)는 사전에 분묘의 위치 및 분묘앞에 설치된 표지판의 묘번 등을 확인 후 촬영하여 망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고 신고(문의)처에 신고

8. 기타

- 상기 지번 일원에 봉분 망실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.
-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기 신고한 분묘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고자께 분묘개장(이장)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,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연고자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7월 30일

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